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합동특수사기죄 신설〉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45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3. 20.
3. 회 부 일: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당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8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기(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준사기(제348조)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합동특수사기죄를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3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第348條의2(便宜施設不正利用)</u> (생략)	<u>제348조의2(특수사기)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u>第348條의3(便宜施設不正利用)</u> (현행 제348조의2와 같음)

현행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제347조, 사기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제348조, 준사기죄)에 대하여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검찰청 「2024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3년 사기범죄의 발생건수는 354,055건, 인구 10만명당 689.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2022년 대비 7.7% 증가하였고,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10년간 45.1% 증가하였음.

[주요 재산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

(단위: 건, 발생비, %)

연도	절도			사기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4	266,784	519.8	-	244,008	475.4	-
2015	246,424	478.2	-8.0	257,620	499.9	5.2
2016	203,573	393.8	-24.2	250,600	484.8	2.0
2017	184,355	356.0	-31.5	241,642	466.7	-1.8
2018	177,458	342.4	-34.1	278,566	537.5	13.1
2019	187,629	361.9	-30.4	313,593	604.8	27.2
2020	173,650	335.0	-35.5	354,154	683.3	43.7
2021	166,782	323.0	-37.9	297,981	577.0	21.4
2022	182,720	355.2	-31.7	329,358	640.3	34.7
2023	189,942	370.1	-28.8	354,055	689.8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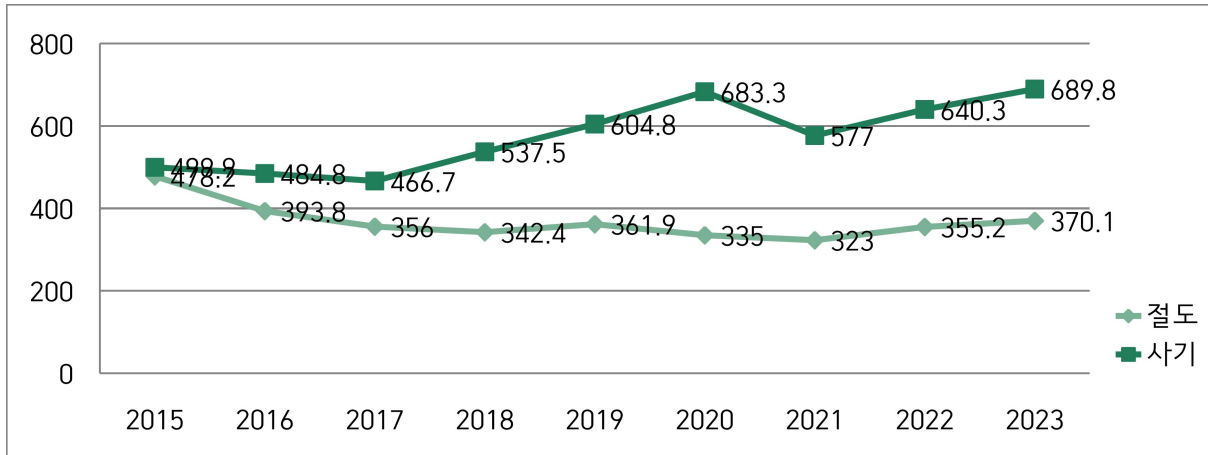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 2024 범죄분석

이는 주요 재산범죄 유형인 절도가 2021년 이후부터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기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임.

사기범죄는 지난 2022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전세사기, 최근 캄보디아 한인 송환사건에서 드러난 보이스포싱, 투자리딩, 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범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다중피해사기에 따

큰 피해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¹⁾²⁾

[주요 재산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



자료: 대검찰청, “2024 범죄분석”

과거의 사기범죄가 주로 안면이 있는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였던 반면, 최근에는 개인의 일상이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사기 범행의 양상 또한 전기통신·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형태의 불특정 다수 대상 사기범죄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³⁾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중피해사기 대응을 위하여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하였음.

1)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14,707건, 피해액 7,766억원으로,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발생 건수는 25.3%, 피해액은 두 배 가까이(98.7%) 증가하였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보도자료, “국가수사본부장도 나섰다…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 공개”, 2025. 8. 28.).

2) 김보연, “보이스피싱 5년간 20대 피해자 2배 늘고, 검찰 사칭 3배 증가”, 조선비즈, 2025. 10. 29.,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5/10/29/QF4PTQJOJ5AALDSYSTCNFD46QA/>, 최종검색일: 2025. 11. 6.; 이예림,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3116억원… 2024년 대비 2.2배 급증”, 세계일보, 2025. 4. 27.,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27507459>, 최종검색일: 2025. 11. 6.

3) “삶 팍팍한데 민생 위협하는 사기 범죄 작년 40만건 넘었다”, 뉴시스, 2025. 3. 17., https://www.ewsns.com/view/NISX20250316_0003100428, 최종검색일: 2025. 11. 9., 전현진, “지능화된 조폭, 사행성·사기 범죄 급증…울 상반기 집중단속”, 경향신문, 2025. 3. 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31023001#ENT>, 최종검색일: 2025. 11. 9.

또한,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으로 보이스 피싱 및 스미싱범죄의 특별단속에 착수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⁴⁾

[최근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피해 현황]

(단위: 건)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발생건수	22,631건	20,575건 (9%↓)	33,196건 (61%↑)	16,561건 (전년동기 14%↑)
피해액	5,479억	4,616억 (16%↓)	9,525억 (106%↑)	7,992억 (전년동기 95%↑)

자료: 경찰청 2025. 9. 1. 자 보도자료

그러나, 현행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사기범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경우를 특수절도범죄로 의율하지만,⁵⁾ 2인 이상의 합동범행을 가중처벌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음. 따라서 사기범죄에 경합범 가중이나 상습범 가중을 적용할 경우에도⁶⁾ 법정형은 최대 15년까지 가능하게 됨.

4)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9월부터 피싱 범죄 대대적 특별단속 착수”, 2025. 9. 1.

5)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흥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6)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에 2인 이상이 역할분담을 통해 사기죄를 범할 경우에도 법정형 상한인 10년 한도 내에서 사기죄의 공동정범⁷⁾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것은 최근의 조직적·역할분담형 사기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⁸⁾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집단의 경우 실무상 사기죄와 함께 범죄단체조직죄⁹⁾가 적용되나, 이는 해당 조직에 단순히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만 해도 사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벌의 인적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주를 이룸.

또한, 특정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가중처벌하고 있기는 하나,¹⁰⁾ 이는 이득액(5억/50억)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수 피해자에게 소액분산 방식의 사기범행이 이루어질 경우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함.

7)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8) 황윤기, “조직적 사기범죄 적극적으로 처벌해야”...전문가들 한목소리”, 연합뉴스, 2026. 6. 25.,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5057100004>, 최종검색일: 2025. 11. 9.

9)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적 사기범행 중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사기·공갈 범행 처벌의 근거로 작용하는 점,¹¹⁾ 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규정으로 보고 있는 않은 점¹²⁾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것임.

이에 개정안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기죄(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 준사기죄(제348조)를 범할 경우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합동특수사기죄를 신설함으로써 사기범죄의 합동성·조직성을 양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2)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는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에 직접 반영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개정안은 2인 이상 “합동하여” 사기죄 등을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기존 합동특수절도 등의 사례와 관련, 판례는 합동범 판단시 ‘2명 이상의 공범자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이루면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현장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¹³⁾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상 합동범의 법리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법정형의 하한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액 또는 이득액의 액수 등 피해 양상을 고려함이 없이, 2인 이상의 합동범행이라는 행위태양만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2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형벌의 비례성에 부합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합동특수절도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합동특수강도는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¹⁴⁾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

13) 대법원은 종래 2인 이상의 공범자 사이에 현장성이 인정될 때 합동범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현장설), 이후 1998. 5. 21. 선고 98도 32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현장에 있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현장적 공동정범설의 견해를 취하였다는 해석이 있음. 이는 합동범의 성립범위를 제한할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합동절도의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를 그 행위 기여도의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합동절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고 함(노태악, “주석 형법 각칙 제6판” p.770.-772.)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14)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3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